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0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11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5년 11월 28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20억원 이하(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투자대상국가(주로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가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정 한도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조세 제도 변경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투자자산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들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년 09월 30일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 [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 EQ458)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상장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되, 목표기준 가격을 달성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위험, 목표 기준가격 적용 집합투자증권 변경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기준가격(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기준 누적 기준가격 1,100원)에 도달한 경우 주식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운용전략일 이후: 채권-재간접형], 단위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최초설정일 ~ 1년까지 (운용전환일 이전)]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35	0.60	1.75	1.35	236	380	531	856	1,8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75	1.00	1.87	1.75	179	368	565	991	2,25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05	0.30	1.28	1.05	157	269	387	641	1,3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25	0.50	1.47	1.25	128	263	404	708	1,61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형)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전문인력	오남훈	1978	책임 (수석본부장)	15개	3,111	28.92	30.48	28.06	30.05	17년 1개월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8개	3,541	28.98	30.48			10년 1개월
	안영현	1999	부책임 (사원)	-	-	-	-			-
	김기태	1991	책임 (과장)	31개	33,836	-	-			3년 3개월
	구동우	1994	부책임 (대리)	3개	4,322	-	-			5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관련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변동은 투자신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도달한 날 이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도달한 날에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므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및 매매비용 발생 등)에 따라 최종실현수익률은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외국주식의 거래정지 및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 지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도달할 경우 운용전환일까지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할 예정이나 투자한 외국주식의 거래정지,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전환일 이후에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이 있으며,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 기준 클래스 변경에 따른 위험	종류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혹은 전부환매가 될 경우에는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류 A → 종류 Ae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P1 → 종류 C-Pe1 → 종류 C-P2 → 종류 C-Pe2 → 종류 C-I 수익증권 → 종류 Cs 수익증권 순차적용). 이 경우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전환 시 수익률은 종류 A 수익증권의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2025년 11월 28일)의기준가격	환매 방법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완료일 전일까지>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영업일에 대금 지급 17시 이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9영업일에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운용전환일 이후>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에 대금 지급 17시 이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에 대금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2025년 11월 28일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11월 28일	존속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로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형 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채권형 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채권형 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관(C-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고유재산(Cs)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용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완료일부터)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EQ4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Q459
수수료선취-온라인(Ae)	EQ4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Q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Q4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Q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Q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Q4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Q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EQ4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EQ47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운용전환완료일부터 (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추가설정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 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20억원 이하(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투자금액은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25년 11월 28일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완료일부터)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EQ4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Q459
수수료선취-온라인(Ae)	EQ4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Q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Q4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Q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Q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Q4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Q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EQ4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EQ47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11-28	최초 등록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오남훈	1978	책임 (수석본 부장)	15개	3,111	28.92	30.48	28.06	30.05	*경력년수: 17년 1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04.01월~07.07월 대우증권 -07.07 월~현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8개	3,541	28.98	30.48			*경력년수: 10년 1 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안영현	1999	부책임 (사원)	-	-	-	-			*경력년수: - -북경대학교 경제학과 -23.10~24.10 미쓰이스미토모은행 -24.11~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기태	1991	책임 (과장)	31개	33,836	-	-			*경력년수: 3년 3개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18.04~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구동우	1994	부책임 (대리)	3개	4,322	-	-			*경력년수: 5개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22.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

운용역	직위	운용 규모(억원)
오남훈	책임운용역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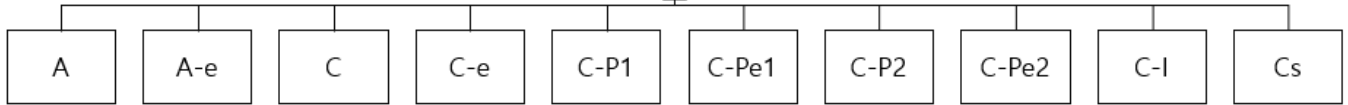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운용전환일 이후 (채권-재간접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Cs)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전용 클래스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기준가격(A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기준 누적 기준가격 1,100원)에 도달한 경우 주식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다만, 운용 전환일 이후 에는 0%)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 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 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1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 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수익증권	40% 미만 (운용전환일 이후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용 전환일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 동조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의 투자대상 ① 및 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 전환일 이후에도 제15조제1항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이 해외주식 등의 거래정지,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비율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익영업일까지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개요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 및 투자지역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일에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목표기준가격**: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누적기준가격 1,100을 말합니다. 다만,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1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마. Class C-P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1 수익 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바. Class C-Pe1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사. Class C-P2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2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아. Class C-Pe2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I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자. Class C-I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s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만, Class C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 **누적기준가격**: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 **운용전환완료일**: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8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달성일 이후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향후 금리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MMF 및 ETF 포함) 등의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가) 운용전환일 이전 투자전략

①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유망 성장주(예: AI, 산업재, 헬스케어, 소비재 등)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 유망성장주는 핵심성장주, 안정성장주, 중소형주의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평가하며, 이 중 핵심성장주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 핵심성장주 : 6개월 내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며 업사이드가 가장 높은 종목군
- 안정성장주 :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 중소형주 : 시가총액 2~3조 이내 종목으로 고성장과 고수익이 기대되는 종목군

(2) 미국과 중국간 AI 패권을 노리는 기술 전쟁이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테마라는 전략으로 중국 AI 굴기를 포함하여 대만, 일본, 한국의 반도체, 부품,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에 주목할 계획입니다.

- 중국 : 국가 주도의 AI굴기, 반도체 굴기 등
- 대만 : PC 밸류체인 → 서버 밸류체인 → AI 서버 밸류체인 기업 등
- 일본 :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 한국 : AI,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기업 등

② **아시아 시장, 섹터, 종목 분석 등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1) **일간 분석**

- 주식, 크레딧, 환율 등 일간 동향 체크 및 시장 변화에 따라 하이라이트 되는 지표 지속적인 수정
- 증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지표 확인

(2) **글로벌 국가/섹터 분석**

- 전세계 시장 및 섹터별 수익률 확인
- 글로벌 펀드 유출입 확인
- 기간별 상대 수익률 확인으로 국가별, 섹터별 흐름 파악

(3) 글로벌 주식

- 기존의 단순한 업종별 분류 뿐 아니라, 신규 테마별 수익률 및 밸류에이션 비교
- 신고가/신저가 종목 분석으로 트렌드 고찰
-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트렌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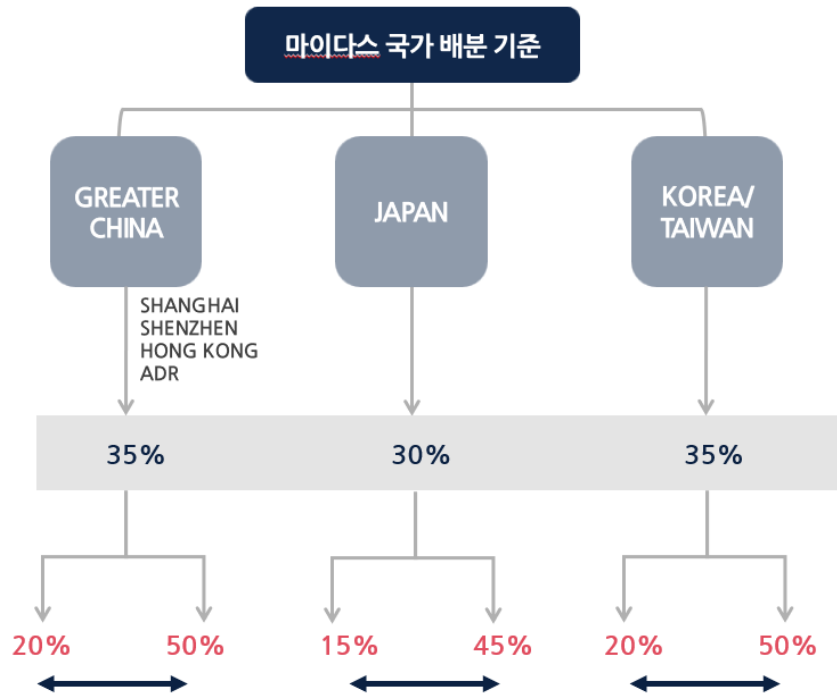
③ 실현 가능한 미래의 장기 성장성을 감안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보유한 종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지표	Valuation 지표	모멘텀 지표
• GDP 성장률 경제 성장성 확인 • CPI 상승률 경제안정성 및 통화정책 예측에 활용 • 산업생산증가율 경기변동상황 체크	• PER 기업의 수익가치 체크 • PBR 기업의 자산가치 체크 • ROE 자본의 효율성 확인 • 배당수익률 수익창출의 크기 확인	• EPS 성장률 기업이익 성장속도 확인 • EPS 성장 모멘텀 주가 선행성 감안 EPS 모멘텀 확인 • ERR 기업이익 추정치 변화율 확인

④ 단순히 시장을 따르는 소극적인 인덱스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1) 아시아 각국의 시장 상황 및 전망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별 투자자산 비중을 조절합니다.

- 범중국 : 35% 수준 편입 예정이며 실제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pm 15\%$ (20%~50%)의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일본 : 30% 수준 편입 예정이며 실제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pm 15\%$ (15%~45%)의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한국/대만 : 35% 편입 예정이며 실제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pm 15\%$ (20%~50%)의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분석 요인들의 강도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을 최소 60%서 최대 100%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⑤ 예상 포트폴리오 (예상 보유종목 Top 10)

종목명	국가	투자비중
TAIWAN SEMICONDUCTOR MANUFAC	대만	9%
SK하이닉스	한국	3%
Alibaba Group Holding Ltd	중국	3%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일본	2%
SONY GROUP CORPORATION	일본	2%
HITACHI	일본	2%
두산에너빌리티	한국	2%
HUA HONG SEMICONDUCTOR LTD	중국	2%
ADVANTEST CORP	일본	2%
IBIDEN	일본	2%

※ 국가배분 및 예상 포트폴리오 등은 실제 운용시 상기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투자대상	내용설명주1)			
한국	■ 글로벌 IT강국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및 AI 관련 투자 수혜 기대 ■ 정부 주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 ■ 주요 산업: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자동차, 조선, 방산			
	인구	1인당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GDP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천만명	\$ 35,570	4.3	2.6	1.4	632	643
중국	■ 증시 활성화 및 국부펀드 개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소비심리 개선 유도 ■ 실물 지표 바닥 구간 통과,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공급 개혁 기대감 ■ 주요 산업: AI, 인터넷, 전기차, 소비재, 헬스케어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1억명	\$ 12,174	8.4	3.0	5.4	3,422	2,564
일본	■ 정부 주도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자본 효율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지속 ■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와 금리 회복에 따른 내수주 강세 병행 ■ 주요 산업: 반도체, 서비스, IT, 게임, 유통, 기계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	수입(십억 ¥)
	약 1.2억명	\$ 37,079	2.6	1.0	1.5	100,881	110,180
대만	■ AI·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미·일과의 기술 협력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 ■ 주요 산업: 전기전자 (IT), 금융, 통신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천만명	\$ 32,442	6.5	2.6	1.1	415	351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1인당 GDP: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023년 기준
- GDP성장률: 세계은행(<https://www.worldbank.org/en/home>)
- 대외무역 규모: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2023년 기준
- 대만 자료는 대만 통계청(<https://nstatdb.dgbas.gov.tw/dgbasall/webMain.aspx?k=engmain>) 참조

(나) 운용전환일 이후 투자전략

①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일에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됩니다.

② 운용전환일부터는 국내 단기 국고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형 투자신탁(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시장 위험(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신용 위험(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유동성 위험(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등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4)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란?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여 특정 목표기준가격 달성을 목표로 운용되며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되는 운용전략 특성상 별도의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투자성과를 비교 또는 참고할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① 비상상황 가능성 인지 단계(1 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상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 발생 원인 파악, 환매 자금 마련 스케줄 점검 등 시행
- ② 비상상황 우려 단계(2 단계): 1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대응방안 및 비상계획 마련
- ③ 비상상황 발생 단계(3 단계): 2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 혹은 1 단계 또는 2 단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비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매연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 방안 강구

이후에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하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 강구할 계획입니다(환매연기 여부 결정, 관련 부서 통지,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 총회 등).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아시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할 경우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운용이 전환되는 것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채권 및 주식시장에 투자함에 따라 관련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변동은 투자신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환 전까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처럼 이 투자신탁은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며, 투자대상국가의 시장·정치·경제적 상황·정부정책·과세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	국제 결제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및 해외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도달한 날 이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 위험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도달한 날에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므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및 매매비용 발생 등)에 따라 최종실현수익률은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외국주식의 거래정지 및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 지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도달할 경우 운용전환일까지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할 예정이나 투자한 외국주식의 거래정지,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전환일 이후에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이 있으며,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 기준 클래스 변경에 따른 위험	종류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혹은 전부환매가 될 경우에는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류 A → 종류 Ae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P1 → 종류 C-Pe1 → 종류 C-P2 → 종류 C-Pe2 → 종류 C-I → 종류 Cs 수익증권 순차적용). 이 경우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전환 시 수익률은 종류 A 수익증권의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 미달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 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국가 및 거래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대내외 경제 정책 변화는 중국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펀드의 투자 성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 또한 동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므로, 해당 시장의 제도적 특성과 규제환경, 외국인 투자제한, 거래일 및 거래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 및 외환 규제,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등의 현지 시장 고유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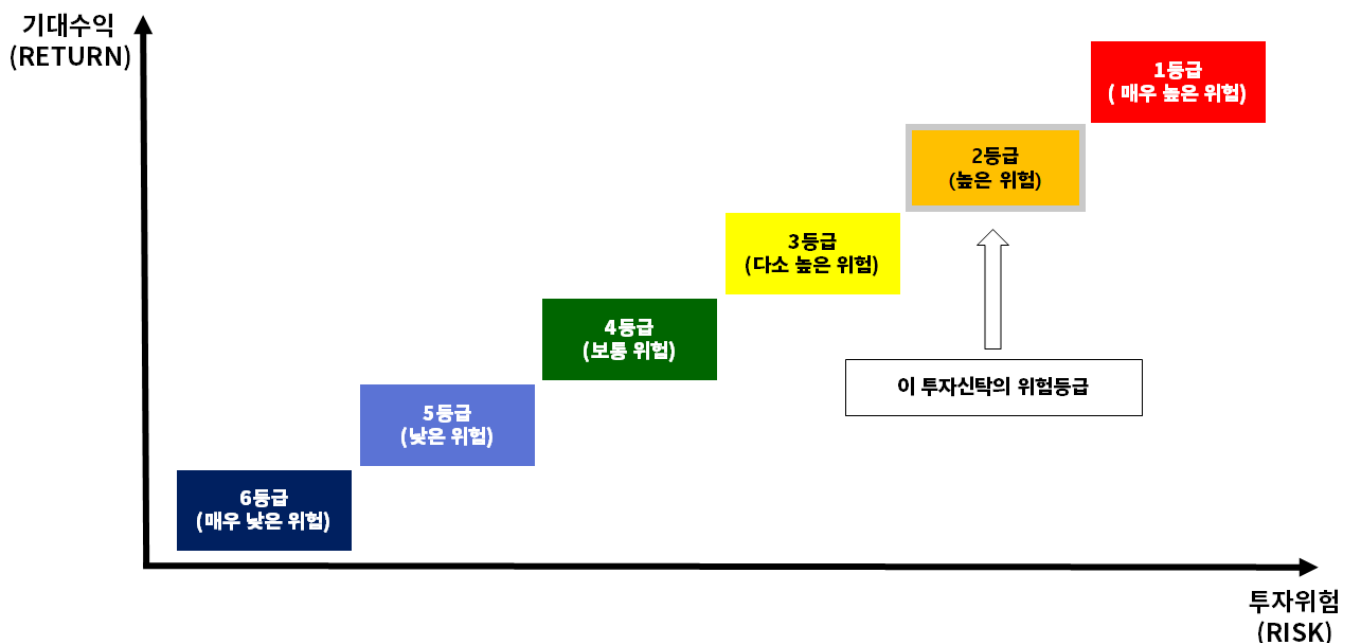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게 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예의 투자를 통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식 등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며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이 투자위험 등급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판매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일까지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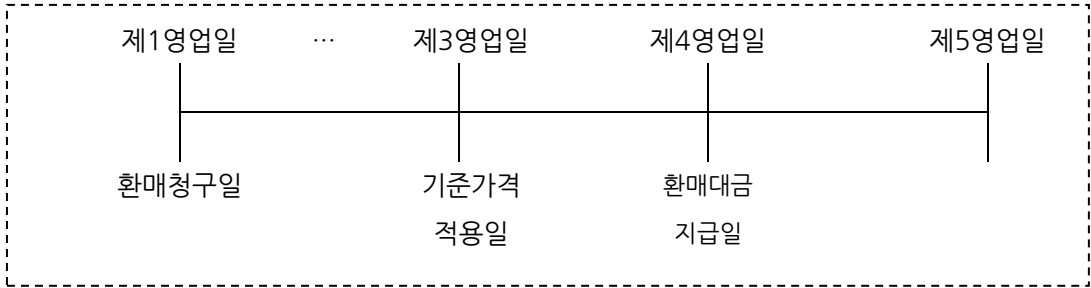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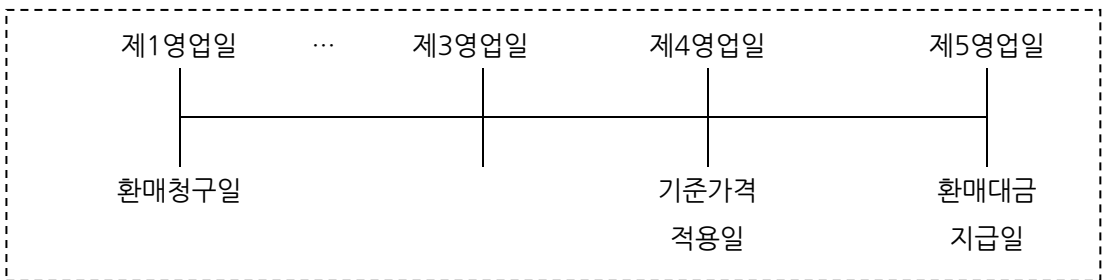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환일 이후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②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이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9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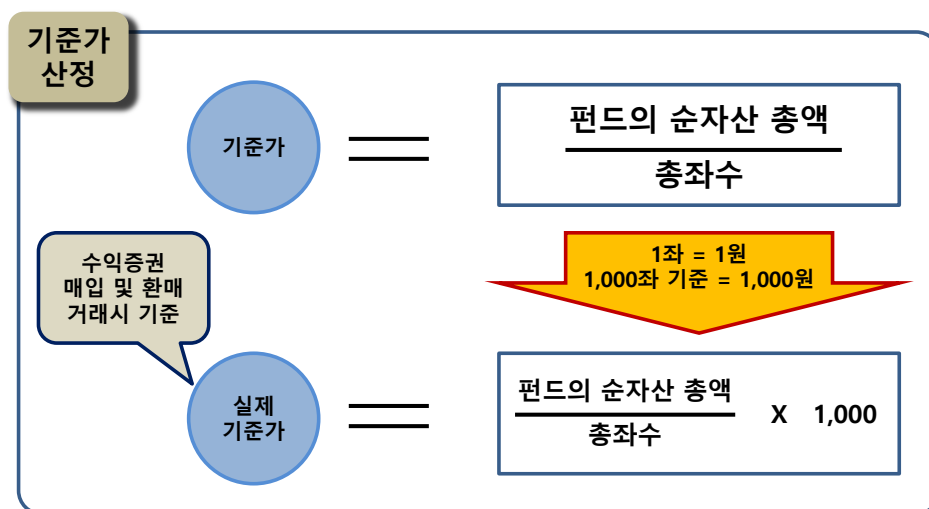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용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납입금액의 1.0% 이내(A클래스), 납입금액의 0.5% 이내(Ae클래스)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주2) 수수료를 차등화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최초설정일 ~ 1년까지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700	0.600	0.030	0.020	-	1,350	-
Ae	0.700	0.300	0.030	0.020	-	1,050	-
C	0.700	1.000	0.030	0.020	-	1,750	-
Ce	0.700	0.500	0.030	0.020	-	1,250	-
C-P1	0.700	0.900	0.030	0.020	-	1,650	-
C-Pe1	0.700	0.450	0.030	0.020	-	1,200	-
C-P2	0.700	0.850	0.030	0.020	-	1,600	-
C-Pe2	0.700	0.425	0.030	0.020	-	1,175	-
C-I	0.700	0.030	0.030	0.020	-	0,780	-
Cs	0.700	0.010	0.030	0.020	-	0,760	-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매 3개월	사유발생시

② 1년 경과 이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350	0.200	0.030	0.020	-	0,600	-

Ae	0.350	0.100	0.030	0.020	-	0.500	-
C	0.350	0.600	0.030	0.020	-	1.000	-
Ce	0.350	0.300	0.030	0.020	-	0.700	-
C-P1	0.350	0.400	0.030	0.020	-	0.800	-
C-Pe1	0.350	0.200	0.030	0.020	-	0.600	-
C-P2	0.350	0.350	0.030	0.020	-	0.750	-
C-Pe2	0.350	0.175	0.030	0.020	-	0.575	-
C-I	0.350	0.010	0.030	0.020	-	0.410	-
Cs	0.350	0.010	0.030	0.020	-	0.410	-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매 3개월	사유발생시

③ 운용전환일 이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100	0.030	0.030	0.010	-	0.170	-
Ae	0.100	0.015	0.030	0.010	-	0.155	-
C	0.100	0.050	0.030	0.010	-	0.190	-
Ce	0.100	0.025	0.030	0.010	-	0.165	-
C-P1	0.100	0.040	0.030	0.010	-	0.180	-
C-Pe1	0.100	0.020	0.030	0.010	-	0.160	-
C-P2	0.100	0.036	0.030	0.010	-	0.176	-
C-Pe2	0.100	0.018	0.030	0.010	-	0.158	-
C-I	0.100	0.010	0.030	0.010	-	0.150	-
Cs	0.100	0.010	0.030	0.010	-	0.150	-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매 3개월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값으로, 신규설정 1년 경과 후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될 예정입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은 합리적인 비용 추정이 어려울 수 있어, 증권거래비용 등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① 기타비용 :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기타비용(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거래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등), 대차거래비용(대차중개지급수수료 등)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거래비용	신규 설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신규 설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④ 상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36	380	531	856	1,82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57	269	387	641	1,3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79	368	565	991	2,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28	263	404	708	1,6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169	347	533	935	2,1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123	252	388	680	1,5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164	336	517	906	2,0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120	247	380	665	1,5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80	164	252	442	1,0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78	160	246	430	98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증권거래비용은 제외)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A클래스 1.0%, Ae클래스 0.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와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4개월, 종류 Ae와 Ce는 약 2년 4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16년 9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주식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한

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 C-P1, C-Pe1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수익증권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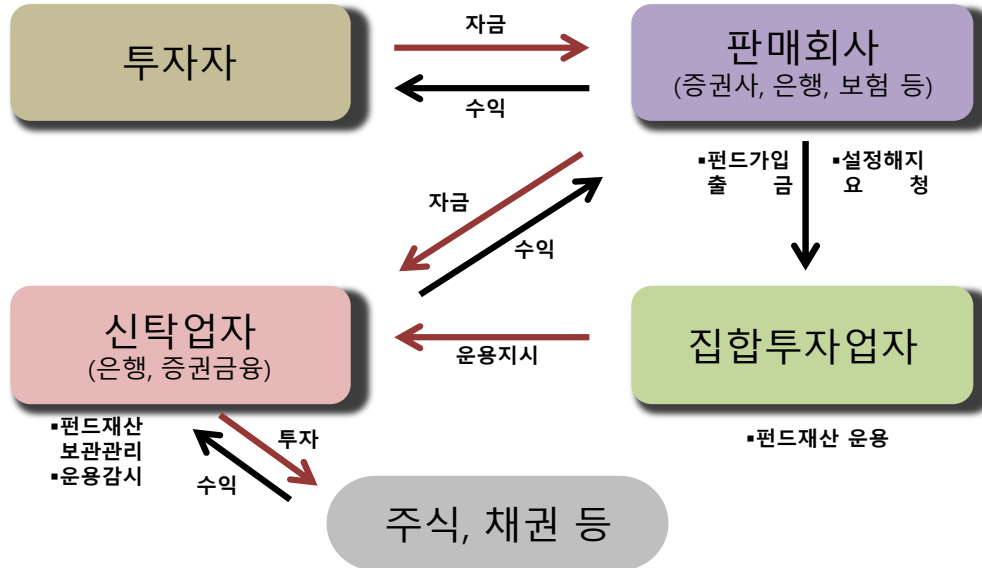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신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억원)
자본금	1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7.6%)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3.31	'24.3.31	항 목	'25.3.31	'24.3.31
현금및예치금	411	321	영업수익	465	444
유가증권	723	676	영업비용	252	243
유형자산	408	423	영업이익	212	200
기타자산	76	88	영업외수익	9	21
자산총계	1,618	1,507	영업외비용	4	1
유동부채	54	5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4	220
고정부채	-	-	법인세비용	46	39
부채총계	54	51	당기순이익	168	181
자본금	100	100			
자본조정	-46	-48			
잉여금	1,509	1,40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자본총계	1,564	1,456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9.30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18,106	6,446	125,640	171	1,298	4,026	377	3,081	-	259,144

※ 일임자산을 포함한 전체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연락처	1588-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연락처	02-6714-4600
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연락처	02-399-3350	02-3215-1400	02-398-39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⑦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3) 및 4)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가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이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주식	1. 평가 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펀드명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투자주체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투자금액	2억원
투자시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투자기간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 단, 신탁계약서 제4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시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 단, 신탁계약서 제4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시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일시 회수

주1)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 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펀드 투자를 유지)

주2)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 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